

의안번호	2211425
의 퇴 인	민병덕의원
회 답 일	2025.7.22.
추 계 번호	25D3617
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명 증원하고,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시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0만원, 2030년 14억 2,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억 3,900만원(연평균 2억 8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국가위원회 민간위원회참석수당(안 제18조)	4	4	4	23	4	39	8
숙의공론화장 마련(안 제29조)	—	—	—	1,400	—	1,400	280
합계	4	4	4	1,423	4	1,439	288

주: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(국가위원회의구성등)	국가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 증원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29조(국민의견의 수렴 등)	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(제7조),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(제8조),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(제15조)의 경우에는 반드시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(제1항 단서 신설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7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8조(국가위원회 구성 등)	○	
2	안 제29조(국민 의견의 수렴 등)	○ (국가전략)	공론화 의제의 성격, 공론화 대상·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할 때, 동 비용추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정보나 유사사례가 없어 추계가 곤란함
		× (지방전략)	
		× (지방발전정책)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국가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(안 제18조제1항)과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의 마련(안 제29조 제1항 단서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- 안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정수가 확대되는 국가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증원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,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 - 안 제18조제1항¹⁾은 국가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“60명 이내”에서 “80명 이내”로 20명 증원하며, 같은 항 후단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
 - － 개정안은 표지부 주요내용에서 고용노동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공무원 위원 6명과 민간위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, 회의횟수는 현행 국가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며, 회의참석수당은 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²⁾을 참고하여 안전검토비를 포함하여 25만원(서면회의 15만원)으로 가정함

1) 제18조(국가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[표 2] 국가위원회 회의내역: 2023~2025년

(예산편성 기준, 단위: 회)

구분		2023	2024	2025	합 계
국가위원회 회의 현황 (예산편성 기준)	전체회의	2 (대면 1, 서면 1)	2 (대면 1, 서면 1)	8 (대면 4, 서면 4)	12 (대면 6, 서면 6)
	전문위원회	2 (서면 2)	2 (서면 2)	4 (대면 2, 서면 2)	8 (대면 2, 서면 6)
비고		-	-	기본계획 수립	

자료: 국무조정실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(Ⅱ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안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숙의공론화장 마련의 추가재정소요는 지속 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(제7조)에 한정하되, 2021년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가 구성·운영한 “국민정책참여단”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
[표 3] 국무조정실 소관 국민정책참여단 운영사례: 2021년

구분	국민정책참여단
주관	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
목적	탄소중립 쟁점 관련 의견수렴
운영기간	2021.8. ~ 2021.12.
시민대표단	533명
활동결과	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정책제언 마련(숙의 과정 중 설문조사 4회 실시)
정책반영 여부	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: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에 의견 반영
예산집행액	11.1억

자료: 국무조정실

[표 4] 국무조정실 소관 국민정책참여단 예산집행 현황: 2021년

(단위: 회)

구분	예산액	집행액	집행내역
국민정책참여단 운영	1,240	1,117	- 탄소중립시민회의 구성(20백만원) - 숙의과정 운영 및 대토론회(850백만원)
-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 운영	1,240	1,117	- 2030NDC 토론회(15백만원) - 참여자수당(232백만원)
비목(합계)	1,240	1,117	
- 일반수용비(210-01)	240	232	국민정책참여단 참석 수당
- 일반용역비(210-14)	1,000	885	숙의과정 운영 전반 대행 용역 등

자료: 국무조정실

2)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(기획재정부)

-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 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 내로 편성
-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- 다만, 그 밖의 숙의공론화장 마련 대상인 ①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(제8조), ②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(제15조제1항), ③ 지속가능성 평가(제15조제2항) 등 3개 항목은 공론화 의제의 성격, 공론화 대상·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할 때, 동 비용추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정보나 유사사례가 없어 추계가 곤란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가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(안 제18조제1항)

- 회의참석수당은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회의일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
 - 개정안은 국가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“60명 이내”에서 “80명 이내”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공무원 위원 6명과 민간위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, 민간위원은 1개 전문위원회에 소속한다고 가정함
 - 회의는 국가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연도의 경우 전체회의 8회(대면 4회, 서면 4회), 전문위원회 4회(대면 2회, 서면 2회)가 개최되고, 그 외 연도의 경우 연도별로 전체회의 2회(대면 1회, 서면 1회), 전문위원회 2회(서면 2회)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.
 -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25만원(서면회의 15만원)을 지급하고,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

[표 5] 국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대면 회의	지급인원(A, 명)	14	14	14	14	14	-
	지급단가(B, 천원)	250	250	250	250	250	-
	대면회의(C, 일)	1	1	1	6	1	-
	소 계 (D=A×B×C, 백만원)	3.5	3.5	3.5	21	3.5	35
서면 회의	지급인원(E, 명)	14	14	14	14	14	-
	지급단가(F, 천원)	150	150	150	150	150	-
	서면회의(G, 일)	3	3	3	6	3	-
	소 계 (H=E×F×G, 백만원)	0.6	0.6	0.6	1.3	0.6	3.7
합계		4.1	4.1	4.1	22.3	4.1	38.7

주: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2025년 7월 현재 수립하고 있으므로, 2030년에 제6차 국가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연도의 회의일수를 확대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숙의공론화장 마련(안 제29조제1항 단서)

- 숙의공론화장 마련의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가 구성·운영한 “국민정책참여단”의 운영 단가(11억 1,700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³⁾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 숙의공론화장(국민정책참여단)을 마련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

[표 6] 숙의공론화장 마련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숙의공론화장 마련 (국민정책참여단 운영)	-	-	-	1,400	-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3.31. 경제전망 기준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5.1	3.6	2.3	1.9	2.0	2.0	2.0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위원정수를 20명 증원하고,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시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0만원, 2030년 14억 2,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억 3,900만원(연평균 2억 8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국가위원회 민간위원회 회의참석수당(안 제18조)	4	4	4	23	4	39	8
숙의공론화장 마련 (안 제29조)	—	—	—	1,400	—	1,400	280
합계	4	4	4	1,423	4	1,439	288

주: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, 숙의공론화장 마련의 추가재정소요는 국무조정실 소관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,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부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